

# 협력업체의 공정한 선정(등록)을 위한 운영지침

㈜ 오 리 온

## 제 1 조 [목적]

이 운영지침은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제시한 ‘협력업체의 공정한 선정(등록)을 위한 실천 사항’을 준용하여 주식회사 오리온(이하 “당사”)의 협력업체 선정 및 운용과정에 대한 투명성과 공정성을 제고하여 공정한 하도급거래질서 확립에 이바지하고, 하도급법 위반행위를 사전에 예방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 제 2 조 [용어의 정의]

1. “협력업체”라 함은 원사업자의 제조위탁 거래 등의 대상업체로 예정되거나 거래중인 사업자로서 하도급법에서 규정하는 수급사업자 뿐만 아니라 일반적인 수탁사업자도 포함한다.
2. “협력업체 풀(Pool)”이라 함은 원사업자가 일정한 기준에 의하여 등록하여 관리·운용하는 협력업체 그룹을 의미한다.
3. “협력업체 선정”이라 함은 원사업자의 협력업체 풀에 등록하는 것을 의미한다.
4. “협력업체 운용”이라 함은 원사업자가 협력업체로 선정·등록된 업체에 대한 거래개시 기회 부여, 등록취소 등 협력업체 풀을 일정한 기준에 따라 관리하는 것을 의미한다.

## 제 3 조 [협력업체 선정기준, 절차 및 결과의 공개]

1. 협력업체 선정기준 및 절차에 관한 사항은 협력업체 등록유효기간 만료 30 일전 또는 등록(갱신등록 포함)심사 개시 30 일전에 사업장, 전자매체(웹사이트) 등에 15 일 이상 공개한다.
2. 협력업체 선정기준을 변경할 경우에는 갱신등록 대상업체에 대하여 45 일전에 그 사항을 서면(전자문서 포함, 이하 같음)으로 개별 통지한다.
3. 협력업체 선정일로부터 15 일 이내에 그 결과를 서면으로 개별 통지하여야 하며, 미선정업체에 대하여는 그 사유를 명기하여 서면으로 통지한다.

## 제 4 조 [선정기준의 구체성 및 명확성]

당사는 협력업체 선정기준을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하여 자의적으로 해석할 우려가 없도록 하여야 한다.

## 제 5 조 [선정기준 및 절차의 공정성]

1. 협력업체 선정기준은 위탁할 거래내용과 관련성이 있으며, 아래와 같은 세부 선정기준 별 반영 비중을 적절히 배분한다.

- 관련 법규에 의한 해당 전문면허 보유여부
  - 외부 전문평가기관에 의한 대상 업체의 재무건전성 여부
  - 일정기간 동안의 하도급법 등 관련 법규 위반사실 여부
  - 해당 거래와 관련된 기술개발실적 및 설비보유 여부 등
2. 협력업체 등록을 위한 신청 및 접수 기간은 15일 이상으로 한다.
  3. 당사의 귀책사유로 협력업체 선정에서 제외되었다고 판단하는 업체에 대하여는 미선정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상의 기간 동안 이의신청 기회를 부여한다.
  4. 정당한 이유 없이 기존 등록업체와 신규 등록업체 간의 선정기준에 차별을 두지 않는다.
  5. 협력업체로 선정·등록된 사업자에 대해서는 정당한 이유없이 거래개시를 위한 입찰 참가기회 등을 제한하거나 차별하지 않는다.

## 제 6 조 [협력업체 등록취소 기준 및 절차의 공개]

당사는 협력업체 선정기준 및 절차를 공개함과 동시에 등록취소 기준 및 절차에 관한 사항도 사업장, 전자매체 등에 15일 이상 공개한다.

## 제 7 조 [협력업체 등록취소 기준의 구체성 및 명확성]

당사는 협력업체 등록취소 기준을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하여 자의적으로 해석할 우려가 없도록 하여야 한다.

## 제 8 조 [협력업체 등록취소 기준 및 절차의 공정성]

1. 협력업체 등록취소 기준은 객관적이고 적절한 사유에 근거하여 설정되어야 하며 기준 및 적용 예시는 다음과 같다.
  - 당해 하도급거래와 관련하여 수급사업자의 중대하고 명백한 귀책사유가 발생한 경우
  - 부도, 휴업, 폐업 등으로 정상적인 경영이 불가능한 경우
  - 하도급법 등 관련 법규를 위반한 경우
  - 관련 법규에 의한 면허가 취소된 경우
  - 당사 평가기준에 따른 불량업체에 해당하는 경우
2. 협력업체 등록을 취소할 경우에는 서면으로 그 사유를 기재하여 통지하여야 하고, 해당 사업자가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상의 기간 내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당사의 귀책사유로 등록이 취소된 경우에는 즉시 재등록 조치를 취한다.

## 제 9 조 [가이드라인 미준수에 대한 제재]

당사는 당사의 임직원이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가이드라인을 준수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에 상응하는 제재조치(인사상 불이익 등)를 취한다.

### 부 칙

#### 제 1 조 [시행일]

이 운영기준은 2016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 부 칙

#### 제 1 조 [시행일]

이 운영기준은 2017년 6월 1일부터 시행한다.